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 2661(2012.10.29)

2. 위 근거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주요개정내역 1부

2. 공고전문 1부

※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/협회업무/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갑

대리 이재신 차장 류항수 전문위원 박상우 국장 최금숙

시행 : 보험 제 2012-601 ( 2012.10.30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ljs@kha.or.kr](mailto:ljs@kha.or.kr)